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67
----------	-------

발의연월일 : 2026. 2. 9.

발 의 자 : 황운하 · 서왕진 · 정춘생
이해민 · 신장식 · 김재원
김선민 · 강경숙 · 차규근
백선희 의원(10인)

제안이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국민 생활의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종사자의 명의 도용 행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자격 확인 규정만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며, 사업자 간 지나친 경쟁으로 배달종사자는 적정배달료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속 등 위험한 배달환경에 내몰리고 있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상 시스템 역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생체정보를 필요 최소한으로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해당사자들이 합의 · 의결하는 적정배달료를 도입함으로써 배달종사자를 보호

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및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하도록 함(안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5 신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에 더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함(안 제19조의4제1항).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에 한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지문·홍채·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제3항).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생체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9조의4제4항).

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9조의4제5항).

5)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및 생체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9조의4제6항).

6) 본인 일치 여부 확인 후에도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1조제1항제9호의5).

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10까지 신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과속 및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배달료로서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정의함(안 제2조제8호).

2)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자, 종사자 등의 이해관계 당사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적정배달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9조의7).

3)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는 운송수단의 유지·관리·운영 비용, 종사자 노무비 등 비용과 종사자의 시간당 배달물량, 휴식 및 대기시간, 유사업종 종사자의 노무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8).

4)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심의·의결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종사자에게 공표된 적정배달료 이상의 배달료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9조의9).

- 5) 적정배달료에 미치지 못하는 배달료를 지급하거나 리베이트 등의 부정한 방법의 금품 수수 등을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정배달료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의1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배달료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및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배달료로서 제19조의7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9조의9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배달료를 말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중 “확인”을 “및 본인 일치 여부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같다)을”을 “같다) 및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에 한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

보(이하 “생체정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및 생체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장의2(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제19조의7(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대표하는 위원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 생활물류서비스 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8(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심의·의결한다.

1. 운송수단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비용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평균적인 배달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외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시간당 적정배달 물량, 휴식 및 대기시간, 유사업종 종사자의 노무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9조의9(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공표 및 지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생활물류서비스 품목에 대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택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모든 화물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 품목
- ②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공포된 적정 배달료 이상의 배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의10(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에 미치지 못하는 배달료의 지급 및 부정한 방법의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 제9호의5를 제9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5. 제1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

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u>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u> ”란 <u>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배달료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및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배달료로서 제19조의7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9조의9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배달료를 말한다.</u>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들의 운전자격 <u>확인</u>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의 운전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다. 이하 <u>같다</u>)을 확인하여야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들의 운전자격 <u>및 본인 일치 여부 확인</u> 등) ① ----- ----- ----- ----- ----- ----- <u>같다</u>) 및 생체정보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② (현행과 같음)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에 한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본인 일치 여

<신 설>

③ · ④ (생 략)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신 설>

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생
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
부 확인방법 및 생체정보의 보
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⑦ · ⑧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장의2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제19조의7(생활물류서비스 적정
배달료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적정
배달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적

정배달료에 관한 중요 사항으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
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
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대
표하는 위원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대
표하는 위원

3. 생활물류서비스 이용자를 대
표하는 위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
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
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
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
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

<신 설>

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
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8(생활물류서비스 적정
배달료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
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
료를 심의·의결한다.

1. 운송수단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
무비용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부
담하는 사회보험 비용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
자의 평균적인 배달조건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비

<신 설>

용 외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시간당 적정배달 물량, 휴식 및 대기시간, 유사업종 종사자의 노무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십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9조의9(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공표 및 지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생활물류서비스 품목에 대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십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택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모든 화물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 품목

②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의4. (생 략)

<신 설>

③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종
사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적정배달료 이상의 배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의10(생활물류서비스 적정
배달료신고센터)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 적정
배달료에 미치지 못하는 배달
료의 지급 및 부정한 방법의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
달료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
스 적정배달료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과태료) ① -----

-----.

1. ~ 9의4. (현행과 같음)

9의5. 제19조의4제5항을 위반하
여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

<u>9의5.</u> (생략) 10. ~ 15. (생략) ② (생략)	<u>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u> <u>사업자 또는 영업점</u> <u>9의6.</u> (현행 제9호의5와 같음) 10.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